

PR1108A.HWP

기자회견문

이장형, 강희철씨 간첩고문조작사건 일본현지 조사를 다녀와서

1. 남승택 신부, 최병모변호사, 오창래 가톨릭인권위원회 총무가 가톨릭 제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과 이장형씨 석방을 위한 후원모임, 가톨릭 인권위원회를 대신하여 지난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일본 가톨릭 정의평화위원회의 협조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일본 방문에서는 이장형씨와 강희철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과 법원의 판결문에 나타난 혐의사실과 행적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2. 우리는 이 조사과정에서 이장형씨의 경우 방일 경위와 그곳의 생활을 주로 확인한 결과 공소사실이나 주요한 관련자들의 역할이 전혀 사실무근이 확인되었고, 특히 82년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이장형씨가 방북을 했다고 나타났으나 그 기간에 일본에 체류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는 27일 경우만 하더라도 사촌누이 이정열과 사업을 논의하던 일본 훼러마이드스즈끼 사장과 연말인사 자리를 함께 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3. 강희철씨는 북제주군 조천면 신촌리 출신으로 현재 간첩혐의로 대전교도소에서 7년째 무기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고향에서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나와 1975년 아버지가 있는 일본으로 건너가 1981년 2월 오사카 소재 부친댁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자전거로 귀가중 일본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81년 7월 한국에 송환되었습니다. 그는 송환 즉시 부산 괴정동 보안대 수사실에서 3박 4일간 전기고문 등 혹독한 심사를 받고 무혐의로 풀려난 바가 있습니다.
4. 그후 강희철씨는 86년 4월 조천면 신촌리 신혼 살림방에서 제주경찰청 대공수사관들에게 불법 연행되어 제주시 광양로타리 서쪽에 위치한 대공분실 2층에 있는 천정과 사방이 온통 빨간색으로 도배된 취조실에서 장장 105일간 고00, 김00, 진00, 현00 등 8명으로부터 번갈아가면서 물고문, 잠안재우기 고문으로 간첩으로 조작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80살이 넘는 조모까지 취조실에 불러다 놓고 온갖 폭언과 수모를 안겨주는 폐륜적 만행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5. 취조결과 드러난 간첩혐의라는 것이,
 - 제주도 관공서 위치에 대하여
제주시에 제주도청, 북군청, 경찰국, 법원, 제주시청, 제주경찰서가 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는지 잘 모르겠다.
 - 도내 중요기관에 관하여
제주시에 도교육위원회가 있고, 제주대학, 실업전문대학, 간호전문학교, 오

현고, 제주상고, 제주일고, 제주농고, 제주여상고, 제주신고, 제주여고, 제중중, 제주일중, 제주신중, 제주여중 등이 있다.
등 도내 중학생이면 상식적으로 아는 사실로서 기밀로서 전혀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6. 혐의와 관련하여 송, 수신기나 난수표 혹은 목격자 등 직접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으며 단지 강희철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때 친지들이 선물로 준 만년필, V자 스웨타, 양복상의 등이 증거를 1, 2, 3호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문경관들은 제주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앞두고 사전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온갖 협박과 방해로 헌법적 권리인 변호권마저 방해를 하여 국선 변호인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7. 특히 강희철씨가 간첩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고 그후 활동을 지원한 중요한 인물로 나타나는 강희철씨 고교동창인 전성광씨는 우리가 일본 현지조사에서 직접 면담한 결과 그는 강희철 ?? 못하는 사이며 재학시절이나 그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친분도 없는 전혀 무관한 사람임이 확인되었습니다.

8. 우리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과거 군사독재시절 공권력과 사회제도가 어떻게 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정을 무참히 파괴될 수 있는가를 뼈아프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 공권력의 명백한 법적 행위를 외면하는 것은 우리 자신 또한 공범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족분단이라는 상황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정통성 없는 독재권력이 특진과 포상을 미끼로 빚어낸 구조적인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9. 이제 개혁을 부르짖는 새정부에서 과거 군사독재 체제가 빚어낸 잘못을 주저없이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장형씨와 강희철 사건은 즉각 재조사되고 공권력 남용으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범범자들은 응당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정부의 부단한 사회개혁에 대한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결코 과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명백한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는데 주저한다면 결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하며 ~~새~~ 문민정부의 신속하고 성의 있는 노력으로 이장형씨와 강희철씨?? 그 가족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안겨 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1993년 11월 8일

가톨릭 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이장형씨 석방을 위한 후원모임

경과보고

가톨릭 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이장형씨 석방을 위한 후원모임

*지난 6월 1일 이장형씨의 사연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고우, 친지등 각계 인사 80여명으로 후원모임을 결성하여 사업을 전개하던 중

*6월 중순경 조천면 신촌리 출신 강희철씨에 대한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후원모임에서는 강희철씨가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7월 가톨릭 인권위원회에 협조를 요청, 오창래 사무국장이 면회를 하고, 사안에 대한 중대성과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8월 강희철씨 가족을 면담하여 상황을 듣고 23일에는 남승택신부·최병모변호사·가톨릭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이 대전교도소에서 강희철씨를 특별면회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강희철씨는 우리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자신은 제주경찰청 보안분실에서 105일간 불법감금되어 고00, 김00, 현00, 진00 등 8명으로부터 번갈아가면서 물고문, 잠안재우기고문 등으로 간첩으로 조작되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그는 27세였으며, 부인은 임신중이었습니다. 그후 아빠의 얼굴도 모르는 어린아이는 일본에 있는 강희철씨 부모에게 보내진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93년 재가를 하여 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송락을 받고 재심을 준비하기 위한 최병모변호사가 선임계를 받았습니다.

*그후 우리는 위 두 사안에 대한 일본 현지조사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일본 가톨릭 정의평화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지난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가톨릭 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가톨릭 인권위원회, 이장형씨 석방을 위한 후원모임을 대표하여 남승택신부, 최병모변호사, 가톨릭 인권위 총무 오창래씨가 일본을 방문하여 사건 관련자들을 만나 증언을 채록하여 돌아왔습니다.

1993. 11. 8.

제 목: [제주] 제주2개단체 '간첩사건 조작' 주장

[제주=허호준 기자] 가톨릭 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대표 임문철 신부)과 '이장형씨 석방을 위한 후원모임'(대표 남승택 신부)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6년 간첩혐의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7년째 복역중인 강희철(35. 복제주군 조천읍 신촌리 출신)씨 간첩사건이 불법감금과 고문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강씨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장형(61. 복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출신)씨 경우도 역시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이씨의 재조사와 석방을 거듭 촉구했다.

두 단체는 이날 오전 제주시 이도1동 천주교 광양교회에서 열린 회견에서 지난 9월20일부터 25일까지 한국가톨릭인권위원회 위원장 최병모 변호사와 오창래 인권위 총무, 후원모임 대표 남승택 신부 등이 일본 현지를 방문해 당시 경찰쪽에서 주장한 사건 관련자 등을 만나 면담한 결과 두 사건이 모두 조작이었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75년 3월 아버지(조총련계)가 있는 일본 오사카로 밀항해 생활하다 81년 2월 현지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강제귀국해 부산의 보안수사대에서 전기고문 등 혹독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처리돼 단기사병으로 군복무까지 마쳤으나, 86년 4월 또다시 제주시 보안분실에 끌려가 물고문 끝에 간첩혐의로 구속됐다는 것이다.

특히 두 단체는 강씨에 대한 공소내용 가운데 강씨의 활동을 뒷 받침했다는 전성광(34. 일본 오사카 거주)씨를 면담한 결과 전씨가 "강씨와 전혀 교분이 없고 얼굴조차 본 적이 없으며 한국 법정에서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면서 녹음내용을 공개했다.

두 단체는 또 84년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의해 조사를 받은 뒤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9년째 복역중인 이장형씨의 경우 "공소내용에는 82년 12월23~31일 방북했다고 돼 있으나 일본 현지조사 결과 같은 기간에 일본에 사는 사촌 여동생 이정열(55)씨와 함께 일본인을 만나는 등 일본체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12 이장형씨 사건 조작됐다

이장형씨 석방을 위한 후원모임(회장 남승택신부)은 8일 오전9시30분 제주시 광양성당에서 가톨릭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간첩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대전교도소에서 7년째 복역중인 조천읍 신촌리 출신 강희철씨(35)가 경찰의 불법감금과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됐다"고 폭로했다.

후원모임은 또 이장형씨에 대한 공소내용증의 방북기간인 82년 12월23-31일에는 이씨가 일본에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후원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강씨의 공소사실에 대한 일본 현지조사결과를 발표, 강씨는 지난 75년 부친이 있는 일본 오사카로 밀항한후 81년 불심검문에 걸려 송환돼 부산보안수사대에서 혹독한 고문수사를 받았음에도 무혐의가 인정돼 풀려났으나, 82년 4월 제주경찰청 대공분실로 불법연행된 뒤 고모. 김모. 진모. 현모등 8명의 수사관들로부터 1백5일간의 고문조사를 받은 끝에 간첩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후원모임에 따르면 강씨의 혐의내용은 도내 관공서와 주요기관. 학교등의 위치를 북한측에 알렸다는 것이며, 송. 수신기나 난수표등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1심 재판과정에서 경찰의 압력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채 87년 8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

특히 공소내용증 강씨가 기밀을 제공했다는 전모씨에게 강씨를 소개하고 활동을 뒷받침했다는 전성광씨(35)도 직접 면담결과, 전성광씨는 "강씨와는 전혀 교분이 없으며 배다른 형인 전씨와도 최근 10여년간 얼굴조차 본적이 없다"며 언제건 법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증언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는 것이다.

후원모임은 또 이장형씨가 방북했다는 82년 12월 당시 이씨는 도금공장사장 스즈키 가스마다 씨로 부터 견습생으로 초청받아 사촌누이 이정열씨(55)집에서 거주했었으며 12월27일에는 정열씨와 함께 스즈키사장과 연말인사를 나눈 사실이 확인돼 공소내용이 터무니없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후원모임은 이어 "이.강씨 사건을 통해 저질러진 공권력의 명백한 범죄행위를 외면하는 것은 우리 자신도 공범자가 되는 것"이라며 "개혁을 부르짖는 새정부는 이.강씨 사건을 즉각 재조사하고 공권력을 남용한 범법자들의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오석준기자>
<<끝>>

경 과 보 고

가톨릭 제주교구 정의구현 사제단
이장형씨 석방을 위한 후원모임

- * 지난 6월 1일 이장형씨의 사연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교우, 친지 등 각계 인사 80여명으로 푸원모임을 결성하여 사업을 전개 하던 중
- * 6월 중순경 소천년 신촌리 출신 강회철씨에 대한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후원모임에서는 강회철씨가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 7월 가톨릭 인권위원회에 협조를 요청, 오상래 사부국장이 변호를 하고 사안에 대한 중대성과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 8월 강회철씨 가족을 면담하여 상황을 들고 23일에는 남승택신부, 최병모 변호사, 가톨릭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이 대전교도소에서 강회철씨를 특별 면회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강회철씨는 우리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자신은 제주경찰청 보안분실에서 105일간 불법감금되어 있고, 김현진 등 8명으로부터 번갈아가면서 물고문 잠안재우기 고문등으로 간첩으로 조작되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그는 27세 였으며 부인은 인신중이었으니다. 그 후 아빠의 얼굴도 모르는 어린아이는 일본에 있는 강회철씨 부모에게 보내진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93년 재가를 하여 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승리를 받고 재심을 준비하기 위한 최병모 변호사가 선입 계를 받았습니다.
- * 그 후 우리는 위 두 사안에 대한 일본, 현지 조사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일본 가톨릭 정의평화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지난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가톨릭 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가톨릭 인권위원회, 이장형씨 석방을 위한 후원모임을 대표하여 남승택 신부, 최병모변호사, 가톨릭 인권위 총무 오창래씨가 일본을 방문하여 사건 관련자들을 만나 증언을 채록하여 돌아왔습니다.

1993. 11. 8

17

천주교 인권위원회

서울시 종로구 명동 2가 1 가톨릭 학관 3층
전화 777-0843 771-7300(교2483) fax: 775-6267

신규영씨 재심 수용 결정에 대한 논평

◆ 주의 평화

우리는 어제 오후 부산지방법원 형사 1부가 신규영씨들이 냈 간접적전 재심 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을 진실으로 환영하며 재판부의 헌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 이번 신규영씨 일가 살해 및 재심 수용 결정은 신규영씨 일가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역대 군사경찰의 고문 조작에 간접 누명을 쓰고 어울한 유발이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준 결정이었다.

이는 또한 군사성전에 의한 반공 대개혁로기의 확대 유생상을 목적으로 조작적이고 계획적으로 자행되었던 각별 조작 사건들이 그 역사적 성판대에 오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

군사성부 하에서 장기간의 일실 고문수사에 의해 간접으로 조작당한 사건은 신규영씨 일가 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천주교 인권위원회의 조작간첩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으로 조작의 혐의가 밝혀진 사건들도 강희경, 이창형, 이한석씨 사건 등 징역에 이른다. 하지만 우리가 조사하지 못한 사건들까지를 포함한다면 그 수는 몇 배나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부산 지방법원의 결정으로 조작간첩 사건들에 대한 조사활동과 재심 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과거 군사성전하에 이의 조작 간첩 사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95. 7. 25

천주교 인권위원회

(1975)

5 신귀영씨 일가 간첩 사건 재심신청에 대한 의견서

† 주의 평화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냉전 시대가 마감되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분단의 광 한반도에도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한은 북미 핵 협상 타결 등 새롭게 변화된 조건에 부응해 통일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혈육을 만날 날만을 기다려 온 이산 가족들은 다시금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대 분단의 또 다른 희생양들은 여전히 차디찬 감옥에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첩 행위를 하고 처벌을 받은 간첩일지라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분단의 피해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져 반목과 대립의 세월을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들과 다름없이 평범한 일생을 보내고 있을 것이며 그들 또한 언젠가 통일이 되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서을 떠濞던 독재정권에 의해 억울하게 간첩으로 조작당한 뒤 통한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한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오늘 바로 그 비극의 주인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신귀영씨 일가 간첩사건의 피해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장도 없이 강제 연행되어 수십일씩 밀실에 감금된채 온갖 고문을 통해 간첩으로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신준석씨의 경우 아직도 선명한 십수년전의 고문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1970년 당시 공소장에 기재된 점의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천주교 인권위원회 변호사들의 조사에 의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인물인 신수영이 조종련 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일본 지바 시장이 발행한 등록 증명서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신수영은, 자신은 조종련 간부도 아니었으며 서성칠 신준석과 만난 사실도 없고 신귀영에게 간첩 행위를 지령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공증을 받아 진술하였고 언제든지 재판정에 출두해 증언하겠다고 약속했다 합니다.

또한 서성칠이 간첩 행위를 하기 위해 조선지도, 부산 시설지도등을 구입했다는 부산 근화 서점은 지도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는 1972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이 서점은 1975년 1월에야 개업했다는 사실이 중부산 세무서장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회신에 의해 증명되었고 합니다. 이것들은 사건 조작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만들어졌다는 신귀영, 신준석씨등의 주장에 타당

성이 있습니다. 1980년 당시의 재판에서는 자백단이 유일한 증언였는데 지금에 와서 그 당시 그문에 의해 자백했던 내용들이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는 사실이 여러가지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신귀영씨 일가 사건은 충분히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귀영씨등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충정한 재판을 통해 법정에서 가려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들이 주장한다고 확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아주 소박합니다.

충분한 재심 사유가 갖춰진 이상 이들이 다시 한번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것 뿐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린당하고 동화를 당한 가정마저 파괴당한채 고통스런 삶을 살아야 했던 이들이 다시금 인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오며 귀 재판부에 주님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광주대교구 윤공회 대주교 부산교구 이갑수 주교 제주교구 노충렬 주교
전주교구 이병호 주교 안동교구 박석희 주교

<신부(328)>

강성호 강승한 강영식 강인찬 경규봉 경훈모 고남일 고병수 고동호 고승욱 고승현
곽동철 곽준석 곽호인 구윤희 권병석 권상목 권이복 권혁동 권호주 기리암 김경옥
김계홍 김광근 김광태 김광현 김교동 김기동 김기집 김대열 김도경 김동준 김명선
김명식 김병상 김병운 김병준 김상진 김상효 김서규 김석순 김성구 김성길 김성동
김성한 김순호 김승오 김승철 김승훈 김양희 김영식 김영식 김영록 김영진 김영태
김영태 김영필 김영환 김용민 김용성 김용태 김용환 김윤섭 김재준 김재복 김재수
김정수 김정현 김종걸 김종인 김준호 김창근 김태윤 김하수 김학우 김한기 김현영
김현준 김현철 김회남 나승구 남경철 남국현 남승택 남학현 류강희 문규현 문양기
민병천 박광원 박기준 박기호 박명근 박명기 박문수 박문식 박병기 박병준 박비오
박상운 박선용 박성열 박성팔 박순신 박승원 박영만 박영봉 박용근 박우성 박윤경
박은종 박재완 박종근 박종중 박종탁 박찬길 박창규 박창신 박창우 박창환 박성일
박치영 박해준 박호철 박홍표 박효철 방의성 방호일 배도동 배상호 배은하 배종호
백광진 백남해 백영배 서석희 서주갑 설요한 손덕만 손병현 손원조 송기인 송문식
송병철 송재훈 송천오 신경남 신대원 신동술 신동철 신인용 신종술 신혁 신현동
안광성 안상기 안성완 안효성 양경도 양경배 양명현 양석현 양요한 양요왕 양기봉
오기백 오동영 오성기 오성백 오용호 오창근 오태준 용영일 우제준 윤근래 유민식
유영훈 유종만 윤명기 윤병훈 윤용남 윤종관 윤종일 윤창용 이계중 이대빈 이득재
이명재 이명찬 이민 이사정 이상섭 이성길 이성길 이성득 이성우 이성주 이수한
이순성 이승용 이승홍 이승훈 이시우 이어돈 이영우 이영우 이영호 이영진 이웅길
이운기 이원태 이유민 이윤복 이용석 이재돈 이재돈 이재열 이재열 이재열 이재우
이재희 이정민 이종원 이준희 이찬우 이철학 이청준 이태수 이현호 이승철 임영배
임준기 임형락 장광재 장민현 장상원 장식윤 장세명 상순관 장용주 장재윤 장충온
장태식 장현준 장효강 전대복 전승진 전종훈 정경수 정귀철 정귀호 정구완 전도식

정라이문도 정병옥 정비오 정상업 정승현 정양현 정월기 정일우 정진호 정현태
 정형달 정호경 정희옥 제경년 조대원 조동성 조동인 조비오 조성교 조성제
 조성학 조영대 조옥중 조인래 조작래 조성오 조진제 조호동 주경수 주영돈 진선진
 진용민 차광호 차호철 최광조 최광혁 최기식 최민석 최상진 최상훈 최성기 최용준
 최원석 최일호 하영래 한 건 한기호 한병한 한봉설 한봉주 한세만 한세종 한의열
 한정현 한창성 한철호 함세웅 함예단 허승조 허중식 허준도 허 환 현경훈 현상보
 호인수 흥경완 흥기선 흥창만 흥충수 흥현웅 황병석 황상근 황재보 홍 브란치스코

<수도자 (132)>

고마리비안카 고옥순 고요셉파나 고정희 고현주 관미숙 구병선 권은희 김경미 김경옥 김경희
 김례지나 김마리세실 김미애 김복자 김선희 김소화데레사 김수옥 김숙녀 김엘리자벳 김양희
 김연순 김영숙 김은숙 김은영 김정자 김주옥 김진순 김현섭 김효정 남순정 노충신 노희연
 류희숙 마리아 마안젤라 매리아네스 박규원 박관영 박명구 박매네릭다 박영민 박영선 박영혜
 박정희 박현선 박효주 방젬마 배그레고리아 백마리아 변요셉파나 서미원 성소피아 소현숙 손인숙
 송병아 송종례 신금선 신명숙 신실라 신정식 아퀴나스 안홍선 양마리아 양숙희 양명자
 양요순 연명덕 연비르짓다 오숙영 오크리스타나 위 정 유흥희 유재선 유프란치스카 윤선희
 윤일순 이경자 이광미 이그라치아 이길자 이마리요한 이명현 이두라히도꼬 이미나 이미순
 이병희 이보나 이수진 이순일 이악네따 이영미 이영애 이영자 이유미 이인규 이성미 이춘자
 이크리스티나 이효선 임화숙 장목옥 장순천 전동수 전해경 정도미니카 성투시아 성마리아
 정성미 정아빌라데레사 정애숙 정영진 조글라라 조리드비나 차이사벨라 채수경 최경선 최데레사
 최미자 최선미 최승례 최영자 최옥순 최해경 하마리안나 한경미 현인설 홍경애 홍정의 황우순

이상과 같이 주교, 신부, 수녀들의 뜻을 모아 전합니다.

1995년 1월 3일

부산 지방법원 제4형사부 귀중

TEL: 777-0643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6 천주교 인권위원회

서울시 종로구 명동 2가 1 가톨릭회관 3층
전화 777-0643 771-7800(교2463) fax: 775-6267

문서번호: 인권위 95-47

수신: 각 현장사 사회부

발신: 천주교 인권위원회

제목: 부산 신씨 일가 산첩 사건 재심수용 결정에 대한 김활의 항고 부산고법에서 기각
결정

†주의 행과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1일 부산 신씨영씨 일가 간첩 사건에 대한 부산지법의 재심 결정이 있을 때
검찰에서는 즉시 항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8월 31일 부산 고법 제 2형사부 재판장 이공원 판사(재판부: 김진의 항고가 이겼
나며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고등법원의 결정이 오늘(9.4) 오전 가족들에게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고법의 결정서를 첨부합니다.(총5매)

95. 9. 4

천주교 인권위원회

1950. 6. 6. 6267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결정

사건 95로2 재심가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3증인 1. 신귀영

주거 부산 북구

본적 경남

2. 신종근

주거 부산 기장

본적 경남

3. 서영숙

주거 서울

본적 경남 양산

한국의 문화는 그 자체로 세계적인 문화이다.

한국 민족학회

中華書局影印本《新編增補古今圖書集成》卷之三十一

부산지방법원 1995. 7. 24. 자 94재고합2 결정

부산지방법원 1980. 10. 15. 선고 80-14430 판결

이 유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부산지방법원이
1980. 10. 15. 같은 법원 80고합448호로 재심청구인인 피고인 신관
영, 같은 피고인 신준석 및 같은 서명실의 두 피고인 등 서성철(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
에 대한 간첩 등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신관영, 같은 망 서성철에
게 각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의형을, 피고인 신준석에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의형을 각 선고하고, 대구고등법원이 1981. 2. 19. 같은 출원 80노1055호(원심결정에
는 80노1055호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대법원이 같은
해 6. 23. 같은 출원 81노993호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각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인 유
부산지방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 망 서성철은 위 형을 복역하였던 증인
1989. 5. 9. 사망하고 재심청구인 서명실이 그의 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심청구인들
1) 나세우는 증거 중 신수영 작성의 진술서(증제1호)는, 위 신수영이 이 사건 간첩행위

동의 자동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일본국에 거주하면 그가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공판장에서 진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을 수 있으므로, 위 신수영은 재심대상 판결 당시 공판장에서 신문할 수 없었던 증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제2항을 인정할 금박한 증거와 같은, 신증거가 증거가치에 있어서 기존 증거들 외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 우위성이 있는 증거를 말하고 여기에서 객관적 우위성이 인정된다고 함은 신증거에 의하면 확정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보증재가 확실하다는 실증을 얻을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증거와 기존의 전증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확정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보증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게 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경찰에서의 자백은 장기간 구속영장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강압적인 수사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고, 그들의 경찰에서의 자백도 위와 같은 강압상태 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행하여진 것으로서 입의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그들의 위와 같은 자백은 여러가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으며, 그 밖에 위 자백을 유포한 박용규, 한정도의 각 친들도 수사기관의 강압이 계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입의성 및 신빙성이 의심이 가므로,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들의 간접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

동의 자동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일본국에 거주하면 그가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판정에서 진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을 볼 수 있으므로, 위 신수영은 재실대상 판결 당시 공판장에서 신문할 수 없었던 증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장의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장의 제2항을 인정할 금색한 증거와 함께, 신증거가 증거가치에 있어서 기존 증거들외 그것에 비하여 대체적 우위성이 있는 증거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체적 우위성이 인정된다면 같은 신증거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구ồn재가 확실하다는 실증을 얻을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증거와 기존의 전증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확정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구ồn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게 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경찰에서의 자백은 장기간 구속영장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강압적인 수사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고, 그들의 경찰에서의 자백도 위와 같은 강압상태 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행하여진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는 것이 아님과 하는 의심이 들고, 그들의 위와 같은 자백은 여러가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신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그 밖에 위 자백을 뒷받침하는 징후, 한정 드의 자 친들도 수사기관의 강압이 계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임의성 및 신밀성이 의심이 가므로, 재실대상판결에서 피고인들의 간첩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

로 즉시한 고고인들의 결합에서의 자의 및 자의를 드러내는 반윤리, 한정도의 각 진술은 일의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확약한 증거일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한 기준의 증거로 충합하여 판단하면 뒤 신수영 작성의 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주체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80고합448호 간월동 사건에 대한 재심을 개시할 것을 구한 재심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원심결정의 이유문 기록에 비추어 절로하여 보면, 먼저 증거의 신규성이 주목되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뒤 신수영 작성의 전술서(증제1호)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새롭게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증거의 명백성이 주목되는, 원심은 "주체를 인정할 통증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증거의 증거성에 주목하는, 원심은 "주체를 인정한 증거"를 선정기록 기준의 전증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확정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부존재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는바, "범죄사실의 부존재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을 명백한 증거로 보는 것은 사실상 무죄의 확실성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을 명백한 증거로 보는 것은 사실상 무죄의 확실성에 대한 일종의 원칙을 재심청구인측에 보급시키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상의 무죄주장의 규칙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이러한 원심의 표현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법정 등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이러한 원심의 표현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니, "법적 사실의 부존재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범죄의 증거로 충분하지 않게 보는 경우"라고 설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결정 전체의 확

TEL: 7770643

CATHOLIC HOSPITAL

자는 결국 신증거인 신수를 작성의 진술서를 일회성 및 신증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바
인들의 검찰에서 차벽 및 낙용금, 한정도의 과 진술과 종합적으로 증가하여 봄 그 것
은 확정판결이 범죄사실을 정당하게 인정되었는지 부부에 은하여 의문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에 비하여 확실성으로 주목성이 있는 증거라는
쪽으로 보아지므로, 이에 대한 혼성의 판단은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뒤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결정에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장은 원심결정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목과 같이 점
는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증본인 나마
우강은
부한고등
법원사주부 박승

1995. 8. 21

재판장 표사 이봉선

판사

판사 안성상

으로 청탁금

간첩단사건 이례적 재심결정 배경

‘지령자’ 진술등 새증거 결실

변호사 일본 현지답사·법원 “무죄증거 가능” 결론

부산/이수윤 기자

부산지법 제4형사부가 부산의 조총련간첩단사건 관련자들이 신청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시국관련 사건으로는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의미있는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재심청구 요건을 ‘소정의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관례는 이에 대해 ‘확정된 원 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됐다 하더라도 이를 제출 또는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가 나타난 때를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재심청구 요건이 이처럼 엄격하게 규정돼 있고 피고인들이 3심의 재판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모두 동원해 방어에 나서다 보니 새로운 증거를 내놓을 수가 없어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법현실이다.

이번에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

아들인 것은 사법부의 의미있는 결정이기도 하지만 전주교·부산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조 성제·신부)와 사건을 의뢰받은 문재인 변호사의 새로운 증거 찾기가 결실을 거둔 것이기도 하다. 전주교 청평위 관계자와 문 변호사는 일본 현지답사를 한 끝에 재판 당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간첩행위 ‘지령자’ 신수영씨의 진술서와 관련 증거를 새로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재판부는 이번에 신씨의 진술서를 전적으로 신뢰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증거들과 종합해볼 때 새 증거인 신씨의 진술서는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로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가 재판기록을 정밀검토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의 일의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선입관이 배제된 결론을 내린 것은 재야 법조계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신귀영(58)씨 등 3명이 80년 2·3월 당시 부산시경 대공분실에 연행된 뒤 같은해 5월 3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40

70여일 동안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 내용은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4월 11일 작성된 제1회 진술서에서 피고인들이 동시에 범 행개요를 자백한 것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장기간의 구금이나 강압적 수사에 의한 일의성이 없는 자백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진술 가운데 △76년 전화번호부의 입수처를 전신전화국이 아닌 우체국이라고 밝힌 점 △부산항만지도를 구입했다고 밝힌 서점이 당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군부대를 활영하기 위해 탔다는 버스 노선이 당시 있지도 않은 점 등을 살펴볼 때 자백의 신빙성도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은 결정 이후 사흘 안에 검찰이 즉시 항고하게 되면 결정 자체에 대한 판단을 고법과 대법원에서 다루게 된다. 또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재심의 1심 재판을 맡아 공판을 진행하게 된다.

기적당사점첫재심

부산地法 결집

“강압상태 자백 인정”

서점들이 고소자 실무를
받아서 전문학자로 했던
고 대신책임자의 를
다. 이번 계획에는 간접적
국가방법과 과정에
반사전에 드는 것과
재설계시행이다.
이들 3면은 부산항만시
설과 군사시설 1000 조종권
에 폐지된 80년 2
월 부산시 경찰부동산 등
법률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
는데 그중에는 지난 6
월 만기 출소했고 또 출소되
는 90년 출소했다.

보안사의 박인균살해기도사건

1. 들어가는 말

가. 본 사건의 박인균(이하 박이라고 칭한다.)은 강원도 강릉에서 출생하여 1980년 강릉 고등학교를 졸업, 동년 3월 강원대학교 병리곤충학과에 입학하여 학내 써클 민중문화연구회에 가입. 활동중

나. 동년5월 민주화시위문제로 소위5.17조치로 인하여 춘천보안사에 연행되어 약1개월간 불법적인 구금. 조사받은 후 강제적으로 2군단 샘밭 훈련장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석방 된 사실과

1982년 5월 광주민주항쟁시 미국과 전두환정권의 책임을 묻는 성조기소각 시위사건으로 국가보안법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 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출소후

84년 서울 구로구 소재 동일제강에 위장취업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남부지원에서 사문서 위조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일이 있으며

그후

2. 보안사 프락치로 추정되는 장창국에 의한 살해기도

가. 박인균은 1986년 4월 강원도 태백시 소재 삼성광업소에 위장취업하여 노조민주화를 위한 노동자 소모임을 운영하여 오던중, 평소 알고 지내던 태백마당 회원 박태성(당시 방위병)으로부터 태백시 소도동 소재, 함태광업소 채탄 후산부로 근무하던 장익수(본명은 장창국. 이하 장으로 칭함)를 소개받고 박은 장을 노동자 소모임에 참가 시켰다.

나. 그러나 장이 소모임에 참가하면서도 비싼 오토바이의 사용과 복잡한 여자관계등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자랑하기도 하고, 나에게 군 작전 지도가 있다. 우리의 상부조직이 어디냐는 등의 상식을 넘는 질문등과 같은 소모임의 구성원인 정문호 (당시 함태광업소 굴진 후 산부)에 의하여 장익수의 진짜 이름이 장창국임이 점이 밝혀지면서 박은 장창국의 수상함을 여겨 소모임에서 장창국을 제외하고 거주지를 장창국이 모르게 이전 하였으나 장창국은 원고의 집을 갑자기 찾아와서는 (그것도 부르거나 주인집에도 물어보지도 않고 부엌문을 통하여 방문을 열고 들어 왔다.) “왜 나 모르게 이사를 하였느냐. 설섭하다. 나는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있다. 생활태도도 고치겠다. 11월7일 노동조합과 민주주의에 관심있는 대한석탄공사장성광업소 노동자를 소개 시켜주겠다. 14시에 태백시 연화동소재 연화다방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다. 약속 당일 기독교 방송국 피디의 방문관계로 박은 14에 연화다방의 장창국에게 전화를 걸어 15시에 만날것을 약속하고 약속장소에 가보니 장창국 혼자 있기에 장에게 석공노동자는 어디에 있고 혼자만 있느냐?고 묻자 장은 지금 가까운 미인폭포부근에서 너에게 술을 대접하고자 개구리를 잡고 있다. 며 함께가자 하여 갔으나 처음 가보는 곳이라 지리도 익숙하지 못하고 암벽과 험한바위로 이루어져 있었다. 15시 30분 정도까지 찾아보았으나 날이 어두어져 포기하고 태백시에서 올진방향의 국도를 따라 걸어 오던중(초겨울의 산간지방은 이때쯤에는 어두어 지기시작한다. 그리고 인적과 차량이 뜯 한 상태이다.) 장창국은 박에게 “너에게 보여 줄것이 있다. 너는 나를 의심하는 것같다. 이것을 보면 내가 노동운동 열심히 할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하며 길옆 낙엽송밭으로 데리고 갔다. 박은 의심도 가고 겁도 났지만 “공연히 지나치게 의심하였나. 최악의 경우 고립되고 좁은 산골도시에서 기관원이 나를 체포 할려면 언제든지 할수 있다. 설마 죽기야 할려고?” 하는 생각으로 따라 갔다. 낙엽송숲을 따라 50여 미터를 들어 가자 갑자기 절벽이 나타나

고 밑으로 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라. 장창국은 절벽 가까이서 나무덤불등으로 감추어 두었던 가로 세로 40.30센치의 청색가방을 꺼내어 놓고 열어 보라고 하여 열어 보니, 길이 25. 지름15센티정도의 원형 철제 사제폭탄과 다이나마이트4~5개 그리고 도화선이 있었다. 이에 박은 깜짝 놀라 이게 무었이냐고 묻자 장은 웃으며 폭탄이다. 김포공항폭파처럼 상동에 있는 미군부대를 폭파하자고 하여 박은 안된다. 노동운동은 평화적으로 하는 것이다. 폭발물은 필요없다. 버려라. 고 하자 장은 너희집에 잠깐 숨겨 놓았다가 나중에 없애겠다. 하길래 박은 안된다. 즉시 없애라 하여 장은 버리겠다고 하며 주변을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철제 사제폭탄으로 원고의 머리를 가격하여 박은 머리가 깨지고 출혈을 하면서 20여 미터의 바위절벽에서 떨어졌다. 다행히 절벽중간에 나무가지와 낙엽등이 바위에 걸쳐져 있어 면져 여기에 떨어져 충격을 줄인후 다시떨어져 목숨을 구할수 있었다. 그러나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등의 상처를 입었으나 살아야 겠다는 일념으로 겨우 기어서 도망을 쳤다. 얼마쯤 가다보니 민가의 불빛이 보여 다시 잡혀 죽더라도 흔적이나마 남기고 죽자라고 여겨져 마을로 들어가 전화로 도계천주교회 김창수 안드레아 신부님께 전화를 걸어 구원을 요청, 신부님이 차를 태우고 도계천주교회로 이동한후 강릉의 부모님께 연락하여 부모님이 도계천주교회에 도착, 24시경 원고의 상처때문에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통리검문소에서 완전무장한군경합동에 의하여 부모님의 완강한 제지에도 불구하고 무장테러범 검거 운운하며 강제로 태백시 장성동 소재 장성병원에 응급치료후 당시 보안사 요원 배천수 명의로 신병 인수 후 다시 재갈을 물리고 수갑과포승으로 결박하고 눈을 가린다음 강릉소재 보안사 지하실로 연행하였다. 사건발생직후 노동자소모임구성원 최진석(동해광업소, 당시24) 원기준(황지교회전도사, 당시26세) 정문호(함태광업소, 당시24세)등10여명을 작업현장과 집 등에서 보안사로 연행하여 갔다.

3. 보안사에서의 고문. 조작

가. 보안사 지하실로 박을 연행하여 보안사 수사관(이하 수사관)10여명이 9일간에 걸쳐 원고를 빌가 벗기고 주먹과 발 그리고 둥동이로 얼굴을 비롯한 전신을 구타, 또는 찬물속에 집어 넣는 물고문, 다리허벅지 사이에 각목을 끼워넣고 밟고, 얼굴에다 수건을 가리고 고추가루물을 콧구멍 속으로 쏟아 붓는가 하면 잡을 안 재우면서, 또한 안면있는 여성의 이를 들먹이면서 예를 들면 태백산 엠티를 가서 그년과 몇번이나 * *를 하였느냐? 그년 몸매 좋던데 너 말고 또 누구한테 * * 대 준 것 아느냐. 그년을 끌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등의 난잡한 성행위관계, 너의 아버지를 직장에서 쫓겨나게 만들겠다. 뿐만아니라 너를 10년이상 징역 살리 겠다. 너의 부상상태로 보아서 오래 못 버틴다. 성한 몸으로 징역살려면 순순히 시인하는 것이 좋다. 등의 인격적 모독과 정신적 고문을 수 없이 하였다.

나. 86년 아시안게임 당시 김포공항 폭파, 북한의 방송을 듣고 지령에 의한 비밀 테러단의 조직, 장창국에게 상동의 미군부대 폭파명령을 내리자 이를 거부한 장창국에게 박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구타를 하여, 참다 못한 장창국이가 반격하려 하자 박 스스로 뛰어 내린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 할것을 강요하였다.

다. 그리고 다이나 마이트는 소모임 구성원인 홍병윤(당시 동해광업소, 28세)에게 지시하여 작업현장에서 훔쳐온 것이고 사제폭탄은 평창에 있는 철공소에서 제작한 것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보안사 수사관이 가지고 있는 16.8절지의 100내지 300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보며 조사를 하였는데 박과 조사 받던 노동자들이 본 것에 의하면 이미 폭탄 테러단의 조직표등이 짜여져 있었으며 장창국과 장창국을 소개해준 방위병 박태성과의 단 들이서 방에서 한 이야기와 무심코 한 사소한 행위까지 상세히 기록 되어 있었다.(예를 들면 박의 방에서 방위병 박태성과의 이야기 도중 무심코 영어사전을 들고 접었다는 행위 까

지도.....)

라. 한편, 박과 소모임 노동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천주교, 기독교등의 재야 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성명서등의 발표가 있자 안전기획부직원이 김창수신부(당시 도계천주교회주임신부)함세웅신부(당시 서울교구 홍보국)김동완목사(기독교인권위원회)신성식목사(당시 선린교회)를 찾아와서 보안사의 행위임을 시인하고 석방에의 주선을 담당하였다. (처음에는 박을 제외한 연행 노동자들만 석방 하겠다고 하였으나 그후 교회측의 강력한 항의로 박까지 석방하기로 함)

마. 11월14일경 보안사 수사관이 박에게 “너는 이미 오래 전부터 민주화 운동에 몸바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많이 조사도 받았고 감옥생활도 해봐서 징역사는 것이 겁 안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이 있고 처음 당하는 일인데 얼마나 힘들고 가족들이 걱정이 되겠느냐? 다 네가 순진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네가 북한방송을 듣고 폭력혁명을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계획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면 다른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 주겠다”고 제안을 해와 박은 다른 사람이라도 내 보내야 겠다는 생각과 고문에 의한 고통을 견디어 낼수 없어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인정 하였으며 11월 15일 박을 제외한 연행 광산노동자들은 석방 되었으며 그후 11월17일 박도 마침내 석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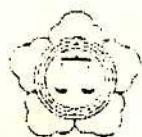
바. 그런데 석방 직전 보안사에서의 주선으로 장창국을 박과 면담을 시켜 놓고 “네가 순진한 사람을 선동해 놓고서 그를 소외시키고 의심을 하니 그가 너에게 잘 보일려고 그렇게 하였는데 네가 반대를 하니 화가 나서 그랬던게 아니냐? 이놈 이야기로 불쌍한 놈이다. 너에게 충성을 할대로 해 놓고 결국 이렇게 인생을 망치게 되었다. 네가 장창국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사제폭탄은 밀가루가 들어 있는 가짜다. 도화선은 타버려 못 쓰는 것이고 다이나마이트는 네가 당황해서 처음부터 잘못 본 것이다. 라고 하며 억지로 장창국과 화해를 시켰다. 이때 장창국은 소모임 구성원들과 달리 고문받은 흔적이 없었다. 그후 종교계등의 강력한 요구로 장창국은 단순폭력으로 구속되었으나 집행유예로 곧 석방되었다.

4. 글을 끝내며

지금 문민정부의 출범후 정보사 테러사건, 평화의 땜건설등 일련의 전두환정권이 행한 정권유지를 위한 음모가 차츰 밝혀져 가고 있다. 12.12쿠데타와 광주민주시민의 확살로 출발한 전정권은 수많은 비리와 부패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민주세력에 대하여 무자비하고 간악한 방법으로 탄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테러와 고문이 필연적으로 발생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나 민주화의 투쟁이 거세게 타오르던 86년은 그야말로 조작과 테러와 탄압이 극에 달하게 되었다. 건국대, 엠엘당, 민추위, 김포공황폭파사건 등이 꼬리를 문다. 이미 밝혀진 김근태, 박종철, 김영삼 현 대통령과 중앙일보 오기자의 테러만이 아니다. 밝혀 진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신호수, 우종원등 수 많은 의문사사건..... 이러한 문제들은 이제는 규명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이땅에서 다시는 암울하고 불행했던 과거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과거 군부독재의 주역과 악행의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오늘도 기득권을 누리며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거리를 활보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현재 박인균은 사건 당시의 절벽에서 뒷 머리를 강타 당하고 추락시의 부상과 보안사의 고문으로 인하여 지금도 두통과 신경통등의 육체적 그리고 불면과 공포의 잠재에 의하여 고통의 휴유증을 앓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몇 차례의 연행, 고문, 감옥생활 그리고 92년 중부 노동당사건시 황인오를 평소 알고 지냈다고 하여 남산안전기획부에 불법적으로 감금되어 다시금 심한 구타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여 고문 휴유증에 더욱 시달리고 있다.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기관
	B-10	



大韓律護士協會

KOREAN BAR ASSOCIATION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량리 1583-1

100-4607-0000-00 SEOUL, KOREA
TEL 02-322-376 048 02-322-3767

변 협 제972호

1994. 12. 16.

수 신 검찰총장

제 목 강경어린이 살해사건 재수사촉구

1. 검찰은 중의의 대표자로 범죄수사관과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권을 둘바로 형사하여 범죄자를 제포수사하고 소추하여 처벌함으로써 국가의 질서확립에 힘쓸 의무가 있습니다.

2.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이 서재원(당 10세) 어린이 살해사건에 관하여 유재용(당 10세)과 김경중(당 10세) 어린이를 범인으로 결론짓고 이들이 평생미성년자이므로 "죄안됨"으로 종결처리한 사건에 관하여 본협회는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1993. 9. 7. 자(변협 제755호)로 귀청에 대하여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 강요, 진술내용의 논리성·신빙성 결여, 수사기록상 살해방법·사인과 사체부검결과 및 투검의사의 의견의 상이, 어린 소년이 혐의로 혹은 주를 당시 혐의가 끊어졌다는 상식상 납득할 수 없는 점, 피의자들의 원력한 알리바이 성립, 범행 후 피의자들의 평상적인 태연한 태도 등」을 들어 위 어린이들이 범인이 아님을 확신하고, 재수사를 통하여 진범을 찾아내는 통실체적 진실을 밝혀 위 어린이들에 대한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진범을 체포하는 한편, 가혹행위를 자행한 경찰관들을 수사하여 소추할 것을 촉구합니다.

3. 위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당 서재원의 가족들이 유재용, 김경중의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93가합886 순해배상청구사건에서 1994. 10. 14.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은 본협회의 진상조사결과 드러난 의문점 등을 적시하여 위 어린이들이 사건의 진범이 아니라는 취지로 관련한 사실이 있습니다.

4. 따라서 본협회는 검찰이 위 살인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하여 세상을 활보하고 있을 진범을 반드시 제포하여 소추하고, 위 어린이들의 억울함을 하루빨리 풀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어린이들에게 가혹행위와 틀법수사를 자행하였던 관련업종의 의벌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세종

94. 11/14. 1p.

국교어린이 2명

살인누명 1년 반

‘친구살해사건’ 법원서 경찰 ‘강압수사’ 인정

검찰과 경찰에 의해 동네친구를 목졸라 숨지게 한 ‘살인공범’으로 지목됐던 국교생 2명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고 1년6개월여 만에 살인 누명을 벗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이른바 ‘논산 국교생 친구 살인 사건’과 관련해 숨진 서재원(당시 10살)군의 가족들이 검·경에 의해 서군 살인범으로 함께 지목된 유아무개(11·국교6), 김아무개(11···)군 등 2명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대전

지법 강경지원이 지난달 14일 “서군을 살해했다는 유군 등의 자백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담당 재판부인 강경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이진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서군 가족이 유군 등의 범행 증거자료로 제출한 경찰수사가록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유군 등의 자백 내용에 신빙성이 없는 등 범행을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런 판결은 지난해 4

월 29일 충남 논산군 연무읍 소룡리 이금수(48)씨의 집 회장실에서 이씨의 아들 서재원군이 숨진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같은해 5월 경찰은 유군 등이 사건 당일 서군 집에 놀러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드링크제를 혼자 마시는 서군에게 나눠 마실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다툼 끝에 서군을 막대기로 때리고 허리띠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화장실로 끌고가 변기에 버린 것으로 공식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먼저 유군이 서군을 막대기로 20여차례 때리고 허리띠로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는 진술 내용은 사체부검 결과 서군의 주검에서 타박상 자국이나 허리띠로 목을 강하게 졸랐을 경우 나타나야 할 이른바 ‘교흔’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서군 집에 간 시점과 기타 범행과정 등에 대한 유군과 김군의 진술도 자주 바뀌어 일관성이 없는데다 서로 엇갈리는 대목이 많아 논리성과 신빙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유군 등이 경찰에서 끌려난 뒤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뺨과 목을 때리고, 감방에 집어넣어 강제돌한테 맞게 하겠다고 하는 비탕에 무서워 거짓 진술을 한 뒤 시키는 대로 현장검증 연습까지 했다고 가족들에게 질한 집 등으로 미뤄볼 때 이들의 자백은 경찰의 강압 수사에 따른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며 사실상 경찰의 ‘조작수사’ 가능성을 인정했다.

숨진 서군의 가족들은 지난해 5월 검·경이 유군과 김군을 서군 살해 공범으로 발표한 뒤 형사비 성년자인 만 14살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풀어주고 사건을 종결짓자 유군 등에 대한 보호감독을 계을리한 과실을 들어 유아무개, 김아무개씨 등 두 어린이의 부모를 상대로 1억 1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대전 / 학석 기자

중앙 11/14/94 [21]

國校生 살인 혐의 벗어

논산사건 "自白 신빙성 없다"

【大田=金秀鉉기자】 지난
해 4월 동네친구를 목졸
라 숨지게 한 혐의를 떠받았
던 국교생 2명이 최근 법
원으로부터 혐의를 인정하
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아
낸 것으로 뒤늦게 밝혔다.
대전지법경정지원 민사

서『徐君을 살해했다는 柳
군의 자백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며 월고의 청구

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기부(재판장 李鎮寧)
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노
신 국교생 친구 살인사건
과 관련, 솔진 徐재원(당
시 10세) 군 가족이 徐군
살인범으로 지목된 柳모
(11·국교6년)·金모(11·
국교6년) 군 부모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들어온다』고 밝혔다.

24 7 21 2019

NO.

여제는 제가 되었을 땅에 허락을 허락한데
제가 되었을 땅에 허락을 허락합니다
제가 되었을 땅에 허락을 허락합니다
제가 되었을 땅에 허락을 허락합니다

707/3 34888 신입사원 징여서류

제가 혀자수원 매력지 등 1부-576호에 출고
되었던 내용이나 최근 해마다 차세대들과 I.T.R.
을 보고 많아 있는데 전자기 혁신들이
여러고 사용으로 고속도로를 활용하는 경향이
간혹은 차세대를 경유해 강원고속도로 터리고
들어 가는 경향이다. 그리고 하루만 학성 분야에서
을 활용하고 있지 않면서 최근에는 충주 북부설에 있어
되는 경향 CA로 이전될 듯 하면서 학성으로 진다.
가로수 : 최근은 특히나 제1의 봄, 54000

가족을 위한 삶의 질 제일이다. 우리는
지난날 안경과 치과와 어려운 차를 정기적으로 차
태양열 차 / 차를 좋아하고 산양에서
여전히 차를 즐기고 있다. 그리고 차
마을 서대문 경찰서에서 차고 차
마을으로 올라서 2015년 12월 18일 차
1월 30일 1912년 1월 18일 차

1월 21일 목 12시 16분 12716 일자
진술 시작 하라며 고통하고 있다며 232일
간 했으나 아침에 웃이자 화재
집단면 이 제작과 화재 태안면 홍제리
홍진영을 살인한것을 알게 된 뒤
이 사건 하였으나 진술내 dung이
마련되어 그 리고 뛰어들 했을까
A. 신사직으로 진술 하거나 예전
그래서 서대문 경찰서는 2/1 진술이 완료되어
라고 했으나

2213194 흥민제작은 여기에서 2018년
 9월11일 이전에 갈지마는 2018년 9월
 20일까지 예상되는 2018년 9월 20일
 2018년 9월 20일
 T.C. 신용자에 일정에 부족한 허위라는
 내용이 고문 당한 것 꼭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93. 8. 1

71

71

71

한방에 끝에 누어 있으려니 무언가 스쳐가는 공허를
느꼈다가 차운 들판과 척추를 헤어버리고, 아니
우리 사회에서 풀수없는 관상박탈을 풀었고 끝나고 끝나고
한쪽은 드리고 축사랑 투자관을 살피며 나를은 차내다
보니 차세대와 청장을 해본다 나에게 무슨운명이 있는가에
마직도 관찰자의 몸은 상쾌하고 벌써 상쾌함은 한로부의 서한껏
개월이 지나면서 집에 떨어온은 고작 천국여만원
이라 그 큰아이가 고교진학을 해야 하고 빠내가 국고출입
과 동시에 중학교 체육을 해야하는데 입학금과 교복비
는. 끝이 깊은 깊은 끝이 부서져 끝난을 가리지
않고 떨어와도 차운차운은 지금의 현장이지만
속도로 차운 차운은 차운은 경찰의 형사계 개색기를
제주 그립다 아무죄없는 한복판은 어떻게 팽가치도
하는것인지 실령술사라는 과학의 계보하나로 인간을
이렇게 만든다 말인가 그 실령술사에게 길 해운이
는 그들은 나와 무슨원한이 있어서 그 연정한
장면을 했던말인가 풀수없는 존재 하늘이 알고
있겠는가 차운한운경이거나 반드시 그 괴물을 밟고
풀것이라 내가 존재하고 있는걸 나를 알고 있는
모든이들이 흥미하고 알고 있다.

그녀의 생활지 이후 청주생활 개편의 손조준기 흥미로워
진행되고 있다 왜그일까 그녀는 대본인의 생각해
보건데 그녀가 책을 그얼렁뚱통 종교과 생활서로
고민이란 그 현실성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생각인걸 같다 머리가 아파고 시력마저 나빠진
기분의 지금의 상황 ~~여기서~~ 그는 내 건강을
다시 찾아서 정상적인 생활개편을 날과 같이
주장하는 생활을 잡아 차와 자식들에게 보람을
줄수 있는 아버가 되어야 할텐데 어렵이다
이럴수록 마음은 헌신하고 모든일 파악하기 힘들어
도 하나둘씩 빙고 일정을 찾자
이런 종경이 무슨 기록한 운명이 있기에
그 얼렁뚱통 살인이라 제목이 봉여 됐을까
참으로 기막힌일이 아닌가 그 미친 혜원의
란 눈이 무슨눈이 죽기에 화를 결코 넘어지면
말인가 드라마에서나 볼수있는 그 자식
결코 ~~사회~~ 사회윤리에 전개해서 인간으로
서 거칠게 하리라 그는 딴인에게

【0142】 '화성살인' 수사 인권은 뒷전

한겨레신문 90.12.25 13면 (사회) 해설 1,352자

◎한달새 50여명 연행 범행추궁·가혹행위/경찰 도덕성 먹칠… 주민 협조 거부 움직임

화성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경찰에 연행된 30대 독신자가 자살하는가 하면 10대 고교생이 경찰에 무수히 구타를 당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의 불법적인 수사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은 또 30대 공장 노동자와 10대 가게 종업원을 연행해 잠을 재우지 않고 조사를 벌여 이들이 풀려난 뒤, 경찰을 고소하겠다고 벼르는 등 강압수사에 따른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경찰은 과학적 증거확보 위주로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를 벌이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으며 범인을 잡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고한 시민을 죄인취급하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경찰조사를 받고 풀려난 용의자 차경훈(38)씨가 정신분열증세를 보이다 자살하고 대학진학 준비를 하던 고교생 김아무개(18)군이 3차례나 경찰에 끌려가 조사과정에서 온몸에 타박상을 입는 등 고문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경찰의 도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혼자 살던 차씨의 경우 그가 과연 몇차례 경찰에 연행됐는지, 어디로 연행돼 어떻게 조사를 받았는지 조차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웃 주민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러나 김군은 풀려난 지 13일이 지난 24일 현재까지도 머리와 가슴·손등 등에 피멍과 타박상 흔적이 남아 있고 수사 경찰관과 조사 장소·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어 고문수사가 확인되고 있다.

또한 공장 노동자 박길운(33)씨도 이를 동안 잠을 자지 못하면서 조사를 받은 파출소와 조사과정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가게 종업원 장아무개(19)군 역시 허위자백을 강요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강압수사를 받은 사실과 조사장소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경찰의 고문에 의한 짜맞추기식 수사관행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박씨와 강군은 화성사건의 중요성을 감안, 수사가 마무리되면 빠른 시일 안에 관련 경찰관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16일 9번째 사건 발생 이후 1개월여 동안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모두 50여명을 용의자로 연행, 집중조사를 벌인 것으로 밝혀져 고문 또는 가혹행위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찰의 고문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화성 주민들은 "그동안 웬 만한 불편쯤은 감수하고 수사에 협조해 왔으나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며 앞으로는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와 제보 등 수사협조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주민들은 이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들을 경찰관으로 잘못 알고 "뭐하려 왔느냐. 또 누굴 데려가려 하느냐. 더이상 괴롭히지

화성 부녀자연쇄살인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범인을 조작하는 듯한 의지수사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천만부당한 일이다. 게다가 연말까지 강력사건을 해결하라는 상부의 압력 때문에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은 더구나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우리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대목은 짜맞추기식의 의지수사관행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과 이에 따르는 가혹행위의 악습 및 마구잡이 수사에서 오는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시비 등 세 가지 점이다.

자백강요에 따르는 고문수사 자체가 인권유린이 되고 있음을 두 말 할 나위가 없겠으나 수사경찰이 그 동안 다수의 주민들을 용의선상에 옮겨놓고 억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벌여 지역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집단반발을 보였던 점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사후유증의 하나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고문시비와 조작의혹이 짙은 의지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9번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윤모군 (19) 이 자백했다는 경찰의 발표가 「사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나 그 동안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던 30대 목공이 정신이상증세를 일으켜 열차에 투신자살한 사건은 범인 조작과 고문수사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용의자로 연행되어 고문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상당 수에 달하고 있는 것은 경찰수사가 얼마나 원시적이었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윤군에 대한 혐의내용에서도 경찰이 조작했을 만한 혼적은 경찰이 발표한 현장 목격자나 추행피해자의 진술이 전혀 엇갈리며 혈흔반응 역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분석 때에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윤군의 자백에 따라 재검사했을 때 나타났다고 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장검증 과정에서 윤군은 『형사님들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으나 나는 범인이 아니다』라고 완강히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그후 『윤군이 다시 범행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히고 있는 점도 아리송하기만 하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란 것이 점퍼와 나뭇가지의 혈흔반응뿐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윤군을 범인으로 단정하기에 무리가 많다. 결국 경찰의 발표내용에는 상당한 허구가 있다는 사실은 경찰이 이 사건을 연내에 해결하려는 과욕에서 윤군을 범인으로 몰고가지 않았나 하는 짜맞추기수사의 의혹만 강하게 제기하고 있을 뿐이다.

첫 사건 이후의 수사과정은 우리의 수사능력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낸 좋은 예에 지나지 않는다. 처음부터 경찰수사는 현장감식이 부실했고 또한 노련한 수사관을 집중배치하여 집요하게 사건을 추적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까닭에 제2 제3의 모방범죄가 꼬리를 문 것만 보

아도 경찰수사의 무성의는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물론 그동안 경찰이 쏟은 노력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수사상의 어려움이 많은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몇 년 동안의 경찰수사는 체계적이고도 지속성이 없었고 지나치게 육감수사에만 매달린 탓에 예방적 기능이 소홀해져 결국은 제9의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남은 일은 사건수사를 원점으로 돌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길뿐이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사람의 무고한 범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상식적인 법언에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 사건수사가 있을 때마다 예외없이 등장하는 고문시비 풍토는 이제 청산되어야 마땅하다.

90년 4월 10일

91년

【0021】 누명 쓴 소년의 인권 (사설)

경향신문 91.02.11 03면 (해설) 사설 1,345자

화성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의 아홉번째 피해자인 김모양 강간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구속됐던 윤모군 (19·공원)이 억울한 누명을 벗는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는 또 한번 「인권부재」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윤군은 일본 과학경찰연구소가 김양 피살현장에서 수거한 정액과 윤군의 혈액의 유전자구조방식 (DNA) 비교감식결과 유전자구조가 다르다고 통보해옴으로써 끔찍한 누명을 벗게는 됐지만 그동안 윤군이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무엇으로 보상받아야 할 것인가. 생각할수록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일본 과학경찰연구소의 「과학적 규명」이 아니었던들 꼼짝없이 강간 살인죄를 적용할뻔한 우리 경찰의 낙후된 과학수사도 한심하기 짹이 없다.

경찰이 화성사건의 범인으로 단정했다가 검찰의 수사과정이나 재판을 통해 무혐의로 드러난 케이스는 윤군이 3번째이다. 지난 87년 5월 5번째 피해자 박모씨 (29·여) 살해범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홍모씨 (42), 또 지난 88년 12월 50대 여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던 전모씨 (37) 등도 경찰의 고문에 못이겨 허위자백 했다가 풀려났었다.

김양이 9번째로 살해당하자 경찰은 화성일대의 주민 학생 교사 군인 등 3만여명을 대상으로 사건당일의 행적·혈액형 등을 무차별 조화면계속(Y/N)?

사했다. 이 과정에서 차모씨 (38)는 경찰의 가혹행위로 정신이상이 생겨 열차에 뛰어들어 자살했는가 하면 대학입시를 앞둔 김모군 (18)도 정신분열증세로 입원해야 했다.

화성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이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들도 더이상 범죄자들의 발호를 방지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경찰의 총기사용, 임의 동행시간의 연장등 인권침해 우려가 큰 조치들도 감내해온 것이다. 국민들이 이처럼 참아주는 것을 공권력이 혹시라도 용의자에 대한 고문행위나 범인 조작행위까지도 용인하는 것으로 착각해선 곤란하다.

지난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경찰관들의 의식과 관련, 조사대상 경찰관의 75%가 「흉악범에 대해서는 법률상 권리다 제한해도 무방하다」고 했고 또 62.3%가 「흉악범은 수사과정에서 어느정도 고통을 가해도 무방하다」고 답변하여 충격을 던진 일이 있다.

윤군에 대한 수사에서도 「어느 정도의 고통」이 가해졌으리란 추측은 이같은 경찰관들의 의식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상부의 불같은 범인검거 독촉에 쫓긴 화성사건 전담반의 압박감이 윤군을 희생양으로 삼았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여기서 다시금 명심해야 할 것이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사람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법언이다.

수사기관은 윤군에 대한 무혐의 처리를 대수롭잖게 보아 넘겨서는 안된다. 「뼈를 깎는 자성」과 다시는 제2의 윤군을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0022】 휴지화된 인권과 형사소송법 (사설)

한겨레신문 91.02.13 02면 (종합) 사설 1,181자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했던 윤아무개군이 일본에까지 의뢰한 '유전자구조 검식' 결과, 그 사건과는 무관함이 판명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윤군이 화성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어린 윤군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고문과 위협을 받았으면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까지 하였을까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윤군 말고도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이같은 그릇된 수사결과와 사건조작으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 처벌받았을까를 상상해 보면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문제와 관련, 아무런 책임 소재도 밝히지 않고 그냥 넘어가버린다면 또 언제 어디서, 누가 윤군과 같은 신세가 될지 알수 없는 노릇이다.

윤군과 연관된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일개 도경찰국 차원으로는 엄청난 인원을 차출, 수사본부를 설치해 놓고 수사를 벌였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이루어지고 목격자의 진술과 고소장의 내용이 조작됐었다.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린 충격적인 사건에서 이 정도의 고문과 조작이 있을 정도라면 나머지 일반 사건에서는 오죽 할까? 더구나 이 사건에서는 분명한 고문과 조작의 근거들이 드러나 있다. 멀쩡한 시민이 하지도 않은 범행을 자신이 했다고 자백했다면

화면계속(Y/N)?

거기에 고문이 가해졌을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 아닌가? 또한 피해자가 쓰지도 않은 고소장이 제출되어 있고, 윤군을 범인이라고 지목한 적이 없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조서에 정반대로 적혀 있다면 거기에 조작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이 모든 일들은 형법상 독지폭행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되고도 남음이 있다. 이제 모든 책임은 검찰로 넘어가 있다.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가혹행위와 조작으로 얼룩진 이 사건마저 그대로 넘겨버린다면 온 국민은 검찰의 인권의식을 근본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범인을 잡는다는 것 이상으로 억울하게 범인을 만들지 않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중요시된다. 그래서 형법이 고문을 처벌하기 위해 있고 형사소송법이 불법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윤군 사건은 바로 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 어버린 사건이다. 그로 말미암아 인권도, 인간성도 함께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버렸다. 우리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전, 그리고 인권을 쓰레기통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도 윤군 사건의 조작에 가담한 경찰관들은 처벌되어야 한다.

경찰 불법체포·감금에 국가배상 판결

‘화성연쇄살인사건’ 김종경씨 일부 승소, 고문은 인정 안돼

pt. 1, 31.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렸던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12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제2부는 김종경(44, 경기도 수원시 거주)씨가 국가와 서대문경찰서 김상구(당시 서울 서대문경찰서 형사과장)씨등 4인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1심 선고에서 경찰의 불법체포와 감금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김씨와 가족에게 3천7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경찰이 김씨를 연행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점, 연행·구금장소를 알려주지 않은 점, 피의 사실을 공포해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은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김씨가 제기한 고문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93년 7월4일 서대문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강제연행되어 서대문경

찰서, 북아현파출소등지로 끌려나니며 11일 동안 세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자백할 것’을 강요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서대문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양손목에 수갑이 채인 채 물고문등을 당하였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93년 10월 상해진단 결과 양 손목에 신경손상을 입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후 김씨는 고문후유증으로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였고, 정신적인 후유증 증세를 보여 왔는데 갈수록 심해진다고 김씨의 부인 오윤자씨는 전했다.

변론을 맡은 신장수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의 고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김씨의 신체감정을 받으려 했으나, 김씨가 완강히 거부했다”며 고문피해사실의 입증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제미동포 김해운씨가 자신의 꿈속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나타나 점술가에게 꿈을 풀어본 결과 ‘김종경씨가 범인임이 확실하다’는 제보를 해온 데서 시작된다. 이 제보를 받은 서대문경찰서 형사들이 연고가 없는 수원까지 내려가 김씨를 연행하였고, 이를 언론들이 화성사건의 진범이 잡혔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이러한 내막이 알려진 뒤 경찰이 실적에 눈이 어두워 벌인 대표적인 심증수사라는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담당서인 화성경찰서와 검찰은 수사결과 김씨가 무죄라는 결론내렸고, 김씨는 지난 93년 10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2M하359> pt. 1, 31.

김종경 사건 자료

1. 인적사항

생년월일: 42세

학력: 고등학교 중퇴

본적: 충남

주소: 수원시 팔달구 매탄2동 196-156호

현재: 부인 오윤자(41)씨와 2남1녀(고등학생, 중학생)와 함께 2,200만원 전셋집과 부인이 수원역 근처에서 주점(실내 포장마차)을 혼자서 경영하고 있음.

2. 병명: 병원에 입원치료 한적 없으므로 정확한 병명은 모르나 두통과 헛소리를 해대는 등의 정신이상 증세 보여 약국 약을 계속 먹고 있음.

3. 사건개요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날 당시 부근인 화성 정남에서 살았음. 그당시 농장 일을 했었는데 사고현장을 항상 거쳐다니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했던 것 같다. 1986년경 오토바이 타고 농장 다니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 나서 일도 못하고 면소재지에서 부인이 치킨가게 하다가 현재 사는 수원으로 이사 방 팔린 것 알아서 가게로 이사함(주점). 그후 김종경씨는 용산전기 회사원으로 월 78,80만원 받으며 잘 다녔음.

1991년 단골손님이 전화를 해 “밖에서 나를 좀 보자”해서 만났더니 “김종경 씨가 범인이니까 당신도 조심해라” 그러나 부인은 무시하고 말았다.

이 당시부터 40대 재미교포 김해운씨가 김종경씨를 미행하며 계속 경찰에 제보함. 김해운씨는 미국에서 꿈결에 손바닥에 김종경이란 이름이 써있었다고 한다. 하도 이상해서 미국에서 점을 쳐보니 화성..에 사는 사람이다. 고했단다. 이후 서울에 와서 화성과 수원에서 3년간 수시로 알게 모르게 탐문 수사 벌임.

1993년 7월경 김해운씨가 서대문서에 제보해 서대문경찰서 형사 5,6명이 퇴근 후 가게에 와있던 김종경씨를 “잠깐 어디 좀 갖다오자”며 서대문경찰서로 데려감. 서대문서 형사들은 48시간은 넘기지 않은 채 3번을 집과 서대문 서로 끌고 다니다 전화로 부인에게 “김종경씨가 범행사실을 자백했다”고 했으며 전화 끊자마자 신문 보니까 이미 보도가 다 돼 있었다. 내용은 “범인 잡아서 자백 받았다. 김종경이란 이름이 버젓이 나오고.....”

성격이 고지식하고 남에게 피해를 줄 사람이 절대 아닌데 앞이 깜깜하고 기가 막히더라. 정말로 이 사람이 화성살인사건 진범인가? 나도 모르게 범행을 하고 다녔단 말인가?

화성서에서 이첩시키라고 해서 서대문서에서 보냄. 화성서에서 조사해본 결과 수원지검서 근거가 없으니 풀아주라고 한후 무혐의로 풀려남. 그후에도 2,3명이 집앞과 가게에서 한달 정도 감시함.

이후 헛소리 하고 아무나 보고 형사인냥 대하고 “내가 농장장으로 있었으니 돼지는 죽였어도 사람은 안 죽였다.”며 소리지르고 사람 오는 걸 무서워하고 형사를 들어온다면 이를 뒤집어 쓰고 있음.

1993년 8월 3일 밤 1시에 집에 가니 서대문서에서 고문당한일, 자신이 고문당한 일을 확실히 밝혀달라는 유서 써놓고 부엌칼로 자살 기도해 20센티미터 복부를 절려 한달 만에 회원함. 밤낮없이 술먹고 술취해서 난동치고 음식도 안 먹고 음식을 막 헤쳐놓다가 잠을 자고 술깨면 괴로운 심정 글로 써놓고, 거의 폐인처럼 생활한다. 또한 부인에게 “너도 살인자로 엮을려고 했다” 경찰이 김종경씨를 의심하면서 부인의 가게를 번번이 들락거렸음.

4. 현재상태

1993. 8. 3일 병원 갔을 때부터 경찰은 안온다. 그러나 자살사건으로 수원 동수원병원 입원료 450만원을 하나도 못 갚고 있다. 누가 돈도 안 빌려준다. 그 전엔 가게수입만도 300만원 정도였으나 1993. 8월 이후부터 손님이 뚝 끊어지고 아는 사람 몇 명씩만 온다. 현재 수입은 100만원으로 남편 약값과 애들 학비로 생활이 어렵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살지 막막할 뿐이다. 김종경씨는 머리를 심하게 맞아 머리가 아프고 수갑채워 비틀어서 손이 마비가 온다. 선풍기 가재도구 등의 각종 사물을 보고 형사인냥 얘기를 나누고 밖에서 형사가 권총으로 나를 쏠려구 하니 현관 문을 잠그라는 등의 헛소리를 함.

5. 고문사실

“사실대로 얘기하라” 그런 사실 없다고 했으나 계속해서 범행 인정만을 요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검사한 후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사표 처리했다. 두번째 현장검증 때 수갑채우고 비틀고 24시간 잠 안 재우고 때리고 뒷머리를 손으로 탁탁 치니까정신이 가물가물하더라. 항상 5, 6명이 조사함. 부인은 “3년 동안 저 상태로 괴로워한다. 오줌, 땅도 쌈다”.

1993년 9월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제기해 1994. 1. 27일 수원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손해배상 1억 4천만원의 민사재판이다. 1994년 3월 현재 서울지법으로 이송되어 계류중이며, 3월 18일경 수원검찰청에서 김조경씨가 혐의사실 없다는 내용의 공문이 왔다.

한월서

존경하는 김영삼 대통령께 올립니다.

교민사례의 이 나라에 참다운 개혁의 막을 올려, 그동안
침입하고 악랄한 국민들의 가슴속에 파묻힌 설움을 풀어
주시는 대통령 각하께 저희 국가유공자 미망인 가운데
칼로 억울한 일이 있어 이 한월서를 올리오니 엄중히 조사 하시어
처벌과 동시에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유공자 미망인 김천숙(당74세 용인군. 1941. 해축리 281 전화
0335-33-5068)은 6.25 전사자인 김영동씨와의 사이에 그남녀를
두어 남편이 전사한 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가난속에서도 꽃꽃한
의지로 자녀들과 생활해 오던 중 뜻밖에도 이른바 화성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 발생후 막내 아들인 김종경(당44세 수원시 팔달구
매단2동 296-156)이 화성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 살인범으로 몰려
서대문 경찰서 형사들에게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처위자책을 하고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범인이 아님을 밝혀져 석방된 후 심한 죄질과
비관 끝에 활복 자살을 꾀하다가 미수에 그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미망인 김천숙씨는 식음을 일체 끊고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저희 동료 미망인들은 이를 묵과 할수 없어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께
선량한 국민이요 국가유공자의 자녀를 충분한 대사와 증거에 의하지
않하고 짜 맞추기 수사에 사건을 해결하려한 처사는 문민정부
시대에 도저히 묵과 할수 있는 일로써 어떻게 인간의 인권이 이렇게
무참히 것밥칠수 있는가 분노를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사건을 심령술사와 정신병자에 의한 제보를 믿고 수사하였다고
하니 더욱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살인범으로 조작하기 위해 몇갓
비 인간적 만행을 저지른 경찰이 헐길만치도 반성할이 없을뿐
아니라 피해자 및 가족에게 조차도 사과 한마디 없는 사실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위한 경찰인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고문수사’ 손해배상 청구
[4/17]

【수원=홍용덕 기자】 경기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몰려 경찰
에서 고문수사를 받다 무혐의로
풀려난 김종경(42)씨와 가족이 25
일 국가를 상대로 1억2천5백만원
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원지법
에 냈다.

김씨의 부인 오윤자(41)씨는 소
장에서 “지난해 7월9일부터 5일동
안 서울 서대문서 형사과 경찰관
들한테 물고문·폭행 등 고문수사
를 당했으며 살인피의자로 누명을
쓰는 바람에 정신적·육체적 고통
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華城사건 범인누명 — 華城事件의 범인은 누구인가?

“해보해니 우리가 정 쑥대밭”



고문후유증으로 극심한 정신착란에 시달리고 있는 金鍾卿씨와 부인 奥允子씨。
<水原=金泰雄기자>

제작이 화성연체살이사
전의 벌인으로 봄아 달력을
벌은 끝에 결국 겸한에서
두협으로 향리난 金剛劍씨
(42·수원시 팔달구 대단동)

이웃근총! 자녀들 정상生活 못해
확인없이 真犯 보고하 言論 일방스러워
목소리로 말로만 헤아림

금융관계자 처벌 어려울 듯

실명제위반 업무방해죄 적용 불가

李首原 裴貞子 부부 이
부부로 신장관 수사관으로
임명되었는데, 사설이 드러났다.
당시에는 청탁금을 주면
제작되는 소화제를 판매하는
방법이 유행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 소화제의
제작자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들이 청탁금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들이 청탁금을 받았다는
소문은 그들이 청탁금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들이 청탁금을 받았다는
소문은 그들이 청탁금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졌다.

張여인사

310호 텔레. 아직 고운 천루TV를 보고있었다. 배가 빨 1시. 손에는 강
의 꿈과 대에서 놀아온 차기 6명의 전설을 듣고 혁사 7명으로부터
나지 못한 유희원(徐熙媛) 청부들이 돌아와서 디자인 업무에奔走한 뒤다. 경제부는 또 솔직한 국립
수업료 대체로 지정하는 행정부령을 제출해 김기현(金基姪) 국무총리에게 제출된다.

【들이 좋았습니다】
수원시립 민사헌의 7부
【던 자작에서 뵈었는데 가족
【짜금씨를 솔직하여 믿어
【물질세법 5시 30분쯤
【번체 화성살인사건이 밝혀

페인팅된 것이 아니 럭자가 문화체육 다크온
니다. 행복했던 우리 가정 93년 7월 4일을 잊지 못한

친구소통법
판이 27일 열었다.
재기 1차전
단군
다니지 못해
괴로웠습니

• 韓
국 서대문 감옥에서 수감 경 것처럼
찰관 4명과 신대로 1의 노릇도 전디기 힘

실신을
파악할
수있을
것입니다.
우리집안은
망가뜨릴
것입니다.
언짢습니다.
문통
신문과
5월에는
지난해
12월8일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제이
여신을
맡기고

정상生活못해

アヒル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
다. ▲水原＝張鳳津기자

93. 8. 4. 6(기자)

풀려난 '학성사건' 용의자 "결백하다" 자살기도 중태

[수원=홍웅덕 기자] 3일 오후 5시40분께 학성사건 용의자로 경찰의 지목을 받아온 김종경(41·3직)씨가 경기도 수원시 매단동 56-1 56 집 거실에서 홍기로 자신과 아랫배 등을 찢고 피를 흘리고 신음하다 아내 오윤자(40)씨에게 발견돼 등수의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중태다.

김씨 집 안방에서는 "3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경찰이 고문하고 때리면서 살인을 했다는 진술을 강요해 거짓진술을 했다. 형님이 나서서 고문당한 것을 꼭 밝혀달라"는 내용이 적힌 16절지 노트 2장 분량의 어머니에게 보내는 김씨의 편지가 발견됐다.

아내 오씨는 "느낌이 경찰 조사를 받고 들려난 뒤 나가서 허튼 소리 하면 경찰이 또 잡아들인다고 했다" "경찰이 군총으로 나를 썩죽이려고 전화트 보고하는 것을 봤다는 등 극도의 불안과 정신질환증세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경찰에 걸쳐 학성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입증할 수 없고 자신이 경찰로부터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해 지난달 28일 풀려난 뒤에도 경찰의 주변수사를 받았었다.



大韓辯護士協會
KOREAN BAR ASSOCIATION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553-1

1553-1 SEOCCHO-DONG SEOCCHO-GU, SEOUL KOREA
TEL : (02) 622-3751, FAX : (02) 622-3757

변 협 제 869호
수 신 법무부장관
참 조 교정국장
제 목 변호인접견거부에 대한 시정촉구

1994. 10. 25.

한국법률재판자료		
1.3.85	B-6	

1. 귀부의 부긍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협회 소속 김형태 변호사는 안동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장형, 김병주, 이성우 3명의 기결수에 대하여 가족들로부터 재심사건을 의뢰받고, 1994. 10. 22. 09:30경 안동교도소를 찾아가 위 3인에 대한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위 교도소는 위 3인이 교도소측에 재심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접견을 거부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접견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고, 특히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 대한 접견권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위 안동교도소의 접견거부는 국민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의 접견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이고,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라고 사료됩니다.

4. 이에 본협회는 위 김형태 변호사가 위 이장형 등 3명을 조속히 접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접견을 거부한 안동교도소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하는 동시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의 구치소와 교도소에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변호사 김형태의 진정서사본 1부. 끝

대한변호사회협회장 이세중